##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3192 제안년월일 : 2022년 6월 15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'시의 사무위탁기관'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한 서울시를 의미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맞도록 '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'으로 수정함.

#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'시의 사무위탁기관'을 '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'으로 수정함
 (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호).

#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호 중 "시의 사무위탁기관"을 "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"으로 각각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<u>시의 사무위탁기관</u>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 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"직장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시 소속기 관 및 투자・출연・출자기관, <u>시의 사무위탁기관</u> 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(이하 "적용대상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3. (생 략)	제2조(정의)

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1조 중 "투자·출자·출연기관"을 "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"을 "시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"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및 <u>투자・출자・출연기관</u> 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 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 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.	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직장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 관(이하 "적용대상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	2 시 소속기관 및 투자・출연・출자 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) ① ~ ② (생 략)	제8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	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의 관련 규정

에 따른다.